

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6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. 2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읍 문산리 35-17번지에 설치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문화증진에 축적된 경험과 인력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청소년의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의 범위를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
- 나.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다.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

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민간위탁계획안

-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문화카페에서 음료수나 간식음식을 판매할때 공무원의 현금취급에 따른 횡령·유용 등 비리발생을 사전 차단하고
-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에 경협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에 위탁하므로써 청소년의 보호·육성과 문화향상을 도모코자 함.

□ 위탁운영 계획

○ 개관예정 : 2001. 2월중

○ 운영시간

- 화요일 ~ 금요일 : 10:00 ~ 22:00 (초등학생은 20:00까지)
- 토요일 ~ 일요일 : 10:00 ~ 18:00
-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휴관

※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낮시간은 성인들도 이용 가능

☞ 평일 15시 이전, 토요일 13시 이전

○ 운영방안

-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-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기준에서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 모든 시설의 사용료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시중 사용료에 크게 못미치도록 책정되어 있음.
- 민간위탁 운영시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을 분석하여 조례 제13조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토록 함.

□ 시설현황

- 위 치 :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-17번지
- 시설규모 : 연면적 958.69m² (약 290평)
- 시설내용
 - 1 층 : 인터넷방(컴퓨터 6대), 문화카페, 노래연습실 (2실), 문화사랑방, 취미바둑실, 상담실, 사무실
 - 2 층 : 소공연장 (약 120석), 댄스연습실, 동아리방 (2실)
 - 지층 : 다목적실
- 사 업 비 : 430백만원 (도비 50, 시비 380)

□ 위탁사무의 범위

-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 전반

□ 위탁기간

- 2년으로 하되 연장가능

□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

-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
□ 민간위탁방법

-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.

□ 민간위탁의 효과

- 효율적인 관리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분야에 질높은 서비스 제공
- 민간단체는 평소에도 세미나, 연찬회 등에 접할 기회가 많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선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가능
- 공무원의 현금취급 방지로 횡령·유용 등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 940 - 4428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청소년담당	김 준 래
	담 당 자	심 제 균